



유기가공식품 질의·응답





CONTENT

I.	유기식품등의 인증(법 제19조)	
	Q1. 유기가공식품은 어떤 식품을 말하나요? ·····	6
	Q2. 유기가공식품 인증은 왜 필요 한지요? ·····	
	Q3. 유기가공식품을 제조할 때 사용 가능한 원료는 무엇인지요? ·····	
	Q4. 유기식품인증제도를 운영하는 목적과 관련법률은? ·····	7
	Q5. 유기농산물과 유기수산물이 섞여 있는 경우 소관부처는? ·····	
	Q6. 수입증명서를 발급하는 인증기관의 목록은? ····	
	Q7. 휴게음식점이 인증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	7
	Q8. 캡슐에 제조하여 인증 신청시 캡슐도 인증을 받는지요? ·····	8
	Q9. 인증제품에 대해 GMO 검사가 의무사항 인지요? ······	
	Q10. 위반시 적발업소에 대한 벌칙은?	
II.	유기식품등의 표시 등(법 제23조)	
	Q1.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농 원료 사용표시가 가능한지요? ·····	10
	Q2. 유기가공식품 표시 방법과 인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	
	Q3. 수입 유기가공식품의 제조국에서 포장 겉면에 인쇄한 "organic" 영문 내용도	
	국내법의 규제사항에 해당되나요?	11
	Q4. 규정된 유기 인증도형 색상 외 다른 색상도 사용이 가능한지요? ·····	
	Q5. '유기농 두부', '유기 두부' 중 어느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요? ······	
	Q6. 유기농 꿀 가공품의 유기표시 사용가능한지요? ·····	
	Q7. 'APPLE JUICE 100%'라는 표시가 적정한지요? ·····	
	Q8. 국내 인증을 받은 수입 유기가공식품에 우리나라 로고와 수입국 로고 동시 사용 가능한지요? ····································	
	Q9. 인증기관 변경사항을 스티커를 붙여서 판매가 가능한지요? ····································	
	Q10. 동등성 체결국에서 수입 후 소분 판매시 표시사항은? ······	
	Q11. 휴게음식점에서 유기농 커피를 판매코자 할 때 표시방법은? ······	
	Q12. 인증을 받은 업소가 On-line 에서 '유기농 커피' 표시방법은?	
	Q13. 애완동물용 사료도 인증을 받아야 유기농 표시가 가능한지요?	
III.	, 수입 유기식품등의 신고(법 제23조의2)	
	Q1. 수입 증명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16
	Q2. 수입 유기식품 신고대상은?	
	Q3. 수입 유기식품 신고방법은? ······	
	Q4. 수입 유기식품의 표시방법은? ·····	
	Q5. 수입 유기식품 신고수리 절차는? ····································	
	Q6. 외국인증(JAS 등)을 받은 유기식품도 수입·판매 가능한가요? ·····	

IV. 동등성 인정(법 제25조)

Q1.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 제도는 어떤 제도인지요? ·····	20
Q2. 동등성 인정받은 국가의 현황은 어디에서 확인 가능한가요? ·····	20
Q3. 한국과 미국·EU이 체결한 상호 동등성 인정의 의미는? ·····	20
Q4. 한·미간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협정의 범위는?	20
Q5. 한국 인증제품을 미국에 수출하기 위한 준수사항은?	21
Q6. 미국 인증제품이 한국에 수입되기 위한 준수사항은?	21
Q7. 인증품을 수출하는 경우 상대 국가의 인증로고를 사용할 수 있나요? ·······	22
Q8. GMO와 관련하여 동등성 인정 제품에 어떤규정이 적용되는지요? ·····	22
Q9. 동등성 인정 협정의 내용을 위반하면 어떤 조치를 하나요? ·····	22
Q10. 이집트에서 생산된 USDA 인증제품 수입 후 인증로고 사용은?	23
Q11. 미국에서 수입된 유기가공식품의 잔류농약 기준은? ·····	23
Q12. 동등성 협정을 통해서 수입되는 유기가공식품의 구비서류는? ·····	23
Q13. EU인증을 받은 칠레산 와인이 동등성 인정 대상인지요?	23
Q14. 인도산 향신료를 이탈리아에서 가공후 수입이 가능한지요?	24
Q15. EU의 제품에 USDA의 로고가 있는데 같이 사용가능한지요?	24
Q16. 동등성 협정 국가의 유기가공식품이면서 우리나라 인증기관의 인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지워야 하는지요?	24
Q17. EU에서 가공된 유기농 차(Tea) \rightarrow 중국에서 소분·포장 \rightarrow EU로 반입된	
제품을 동등성 인정으로 수입이 가능한지요?	24
Q18.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	
되는 경우에 동등성 인정이 되는지요?	24
Q19.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국과 국내의 허용물질이 일부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수입이 가능한지요?	25
붙임자료	
1. 유기식품 인증기관 지정현황('16.03.15기준) ·····	26
2.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의 기준	
3. 인증신청서(제조·가공 또는 취급자용) ·······	
4. 기준적합성 확인으로 사용 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 유형	
5.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로 사용이 가능한 물질	

 2

이 Q&A에서 쓰이는 용어의 범례

유기식품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의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인정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지칭하며 인증기관을 지정함

인증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부터 유기가공식품을 인증할 수 있는 업무를 인정받은 곳(붙임 1)

● 친환경 농식품의 종류

• 친환경농수산물 : 유기 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종 류	기준
유기농수산물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수산물 ※ 유기수산물 : 김, 굴, 홍합, 미역, 다시마
무농약농산물	무농약농산물 : 유기합성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이내 사용
무항생제 축·수산물	무항생제축·수산물 :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제가 첨가되지 않은 '일반사료'를 급여하면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수산물 ※ 무항생제수산물 : 넙치, 무지개송어, 뱀장어, 전복, 흰다리새우

- 유기식품: 유기농·수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 유기가공식품: 유기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 유통되는 식품으로 유기원료 함량이 제품 중량의 95% 이상이어야 함(물, 소금 제외)

예) '유기농 콩'으로 제조한 두부, 된장, '유기농 우유'로 제조한 치즈 등의 가공식품

※ 유기가공식품 인증, 표시, 국가별 동등성 협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u>『친환경</u> 인증관리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를 이용하여 주시고, 더 구체적인 문의사항은 인증관리팀 054-429-4182(유기가공식품), 054-429-4181(동등성 인정 협정)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유기식품등의 인증



유기식품등의 인증



1. 유기가공식품은 어떤 식품을 말하나요?

- 유기 농산물·축산물·임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
- 예를 들면, '유기농 콩'으로 제조한 두부·된장, '유기농 채소'로 제조한 녹즙, '유기농 우유'로 제조한 치즈·발효유와 같은 가공식품이 유기가공식품에 해당됩니다.

유기식품 인증제 도입

- 2014.1.1.부터 유기 표시제(식약처 소관) 폐지, 인증제 전면 시행
- ⇒ 국내에서 식품에 유기(Organic) 표시·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법에 따라 유기 인증을 받아야 함
- 단, 정부 간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국의 정부 인증 받은 유기가공식품은 수입가능

Q 2. 유기가공식품 인증은 왜 필요한가요?

-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정한 공인받은 인증기관이 가공식품의 사용원료와 제조공정을 심사하여 법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보증하는 제품만 인증로고와 유기(농)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2008년부터 시행)
- 유기가공식품은 최종 제품 분석만으로는 그 진위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신력 있는 제3자 기관이 제조과정 등을 심사하는 인증제도는 유기 표시의 신뢰도를 높임
 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Q 3. 유기가공식품을 제조할 때 사용 가능한 원료는 무엇인가요?

- 유기가공식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료를 95%이상(물과 소금 제외) 사용하여야 합니다.
- ① 국내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유기 농·축·수산물, 유기가공식품)
- ② 우리나라와 동등성 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된 유기가공식품
- ③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내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해외 생산 유기가공식품 (붙임 4참조)
- * ②항은 우리나라의 유기가공식품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양국 정부가 동등성 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된 유기가공식품을 말함
- * ③항은 해외에서 생산된 유기가공식품(외국기준에 따라 인증 받은 유기가공식품)중 국내 수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기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 ③항의 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유기표시 도형(인증로고)은 사용할 수 없으나, 그 외 유기인증품 표시는 모두 가능(유기(농) 등의 표현을 제품명, 제품의 모든 표시면, 원료명 함량 표시란 등에 사용할 수 있음) ⇒ 기준적합성 확인으로 사용 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 유형(장관 고시)은 '16. 10. 1일부터 폐지됨

- 식품첨가물과 가공보조제는 유기가공식품 제조에 사용 가능한 물질로 법에서 허용한 물질 (붙임 5 참조)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 참고 : 붙임 4. 유기가공식품 원료로 사용가능한 해외 인증 유기가공식품 고시 붙임 5. 유기가공식품 허용물질

4. 유기식품인증제도를 운영하는 목적과 관련법률은?

● 유기식품등의 산업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관련법은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Q 5. 유기농산물과 유기수산물이 섞여 있는 경우 소관부처는?

- 유기원료의 함량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부처가 소관부처가 됩니다. 즉, 유기 농산물·축산물·임산물의 비율이 유기수산물의 비율보다 큰 경우는 농림축산부식품부 장관이 됩니다.
- 유기 농산물·축산물·임산물의 비율과 유기수산물의 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농림 축산부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됩니다.

Q 6. 수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한국/미국/EU 인증기관의 목록은 어디에서 확인 가능한지요?

- 한국/미국/EU의 인증기관의 목록은
- 한국: www.enviagro.go.kr
- 미국: http://www.ams.usda.gov/sites/default/files/media/OrganicCertifyingAgents.pdf
- EU: http://ec.europa.eu/agriculture/ofis_public/r8/ctrl_r8.cfm?targetUrl=home&lang=en

Q 7. 제과점, 휴게음식점 등이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 구비서류 :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계획서, 경영 관련자료,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 등
- 인증기관은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면 인증서를 교부하게 됩니다.



- 인증신청서의 처리기간은 2개월이며, 인증기관의 신청서 접수현황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될 수 있습니다.
-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이며, 인증을 유지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 * 참고 : 붙임 1.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 현황, 붙임 3. 신청서 서식

② 8. 캡슐에 유기원료 100%를 넣은 가공식품을 제조하여 인증 신청시 캡슐도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요?

● 캡슐 역시 완제품의 원재료에 포함되므로 캡슐을 포함한 원료의 95% 이상을 유기원료를 사용하고, 유기가공식품 제조 시 사용가능한 허용물질을 이용하여 제조 시 인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Q 9. 유기가공식품 인증제품에 대해 GMO 검사가 의무사항 인지요?

- GMO 검사는 인증기관의 심사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사안으로 인증사업자에게 GMO 검사와 관련된 의무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 다만, 인증기관의 인증심사원은 현장심사 시 일반제품과 같은 생산라인을 사용하여 오염우려가 있는 경우와 유기가공식품 인증품에 GMO의 혼입이 우려되는 경우에 해당 제품에 대한 GMO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10. 위반시 적발업소에 대한 벌칙은?

-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등
-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수입한 인증품을 신고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등
-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인증기관의 장으로 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 등
-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II. 유기식품등의 표시 등



유기식품등의 표시 등



✔ 1.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농 원료를 사용 하였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다만, 유기농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에 원료 함량에 따라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 ① 원재료의 70% 이상이 유기농축산물인 경우
 - ⇒ 주 표시면을 제외한 표시면에 유기농 표시 가능
 - ⇒ 유기 표시할 경우 원재료명 및 함량표시란에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해야 함
 - ② 특정 원재료로 유기농축산물을 사용한 경우
 - ⇒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해당 원재료명의 일부로 유기라는 용어를 사용 가능
- 제한적 유기표시가 가능한 원료는 국내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과 동등성 인정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에 한하며, 인증로고나 제품명으로 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동등성이 인정되지 않은 국가의 인증만 받은 원료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유기농 원료를 사용했다고 표시할 수 없습니다.
- * 붙임 2.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 기준

2. 인증 받은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표시 방법과 인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 인증사업자는 유기표시(표시도형 또는 표시문자)와 인증사업자의 업체명, 전화번호, 포장 작업장 주소, 인증번호, 인증기관명 및 생산지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 유기가공식품 인증정보는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enviagro.go.kr)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포장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의 표시방법은 아래 예시의 ① ~ ⑥의 인증정보를 표시판 또는 푯말에 표시 할 수 있습니다.

<유기가공식품 표시 예시>

인증품의 표시사항



① 성명(업체명): ** 식품

④ 인증번호 : *-*-**

② 전화번호: 054-429-1234

⑤ 인증기관명: ** 인증원

③ 포장작업장 주소 : 김천시 율곡로 141 ⑥ 생산지 : 김천시

- 1. 표시도형 내부의 '유기농'은 '유기가공식품'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색상은 녹색 파랑색, 빨강색 또는 검정색을 사용할 수 있다.
- 2. 농수산물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방법에 따라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3. 수입 유기가공식품의 제조국에서 포장 겉면에 인쇄한 'organic' 영문 내용도 국내법의 규제사항에 해당되나요?

- 국내인증을 받았거나 동등성 인정 협정국의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은 "organic"표시와 로고사용에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 다만, 천연, 무공해 및 저공해 등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4. 규정된 유기 인증도형 색상 외 다른 색상도 사용이 가능한지요?

● 녹색을 기본 색상으로 하되.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파랑색. 빨강색. 검정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5. 유기콩을 원재료로 사용한 두부의 '유기농 두부', '유기 두부' 중 어느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 유기식품가공 인증을 받으셨다면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 유기가공식품인증을 받은 경우 '유기가공식품', '유기농' 또는 '유기식품', '유기농 두부', '유기 두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6. 유기농 꿀 가공품의 유기표시 사용가능한지요?

- 유기농 꿀을 이용한 가공품은 현재 우리나라의 유기양봉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외국인증을 받았을 경우에 유기표시가 가능합니다.
- 다만, 향후 우리나라의 유기양봉 인증기준이 만들어지면 유기가공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지 유기농 사과주스의 라벨 정면에 'APPLE JUICE 100%'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표시가 적정한지요?
 - '100% 유기'라는 표현은 미량이라도 첨가물이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8. 국내 인증을 받은 수입 유기가공식품에 우리나라 로고와 수입국 로고 동시 사용 가능한지요?
 - 국내인증을 받았고 수입국에서도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면 수입국의 로고도 사용 가능합니다.
 - 또한, 동등성 인정 협정에 따라 수입된 제품은 양국의 로고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9. 국내에서 취급기관 인증을 받은후 유기설탕을 수입하여 소분 판매하고 있는데, 국내 인증기관이 변경되어서 표시사항에 새로운 인증기관 변경사항을 스티커를 붙여서 판매가 가능 한지요?
 - 변경 전 표시사항이 보이지 않도록 지우거나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 Q 10. 유기가공식품을 동등성 인정 체결국에서 수입 후 국내에서 소분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은?
 - 유기식품 등을 소분 및 취급하여 유기로 판매하고자 할 경우 취급자 인증을 취득 해야하며, 업체명·전화번호·포장작업장 주소·인증번호·인증기관명 및 생산지·생산자 인증번호를 표시 하여야 합니다.
 - 다만, 해장한 수입제품은 수입국의 인증로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1. 휴게음식점에서 유기농 커피(아이스크림)를 조리하여 판매 코자 할 때 표시방법은?
 - 판매장의 메뉴판이나 푯말에 '유기농 원두(우유)를 사용한 커피(아이스크림)'로 표시하여 판매하면 됩니다.

● 이 경우에는 유기농 커피(우유) 원료의 출처를 알 수 있는 '인증서'(생산자용 또는 제조·가공 및 취급자용)를 비치하여 소비자나 관련 공무원의 서류제출 요구시에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Q 12. 유기가공식품인증을 받은 업소가 인터넷 등 On-line 에서의 '유기농 커피' 표시방법은?

- On-line에서 '유기농 커피' 표시를 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인증기관이 발급한 유기가공식품 '인증서' 사진이나 인증번호가 있는 인증로고를 게시하면 좋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인증번호 : 제 호 **인 증 서 * (양식 참조)**《제조 · 가공 및 취급자용》

인증구분 유효기간

제조·가공자
(취급자)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사업장 소재지
취급농축산물의 산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제34조) 및 「농림 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식품등의 제조·가공 또는 취급기준(무농약

※ 취급자에게 발급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품 목

인증 부가조건

농산물등의 취급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인증기관의 장

직 인



Q 13. 애완동물용 사료도 국내법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유기농 표시가 가능한지요?

●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유기가공품(비식용유기가공품)은 현재 양축(養畜)용 사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애완동물용 사료는 현행 법령의 인증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애완동물용 사료는 해외 인증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국내에서 별도의 인증절차를 거칠필요없이 '유기'로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III. 수입 유기식품등의 신고



수입 유기식품등의 신고



1. 수입 증명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 인증제품의 증명서는 한국 인증기관이 발급하고,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 인증제품의 증명서는 미국 인증기관이 발급합니다. 유기사업자가 인증기관에 수입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인증기관은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아 수입증명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Q 2. 수입 유기식품 신고대상은?

- 수입 유기식품 신고대상은 판매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유기식품(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가공식품)입니다.
- ※ 유기수산물은 해수부 소관 유기식품 관련법 시행규칙 공포 후 적용 국내에서 유기식품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다음 2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① 한국「유기식품법」에 따라 인증 받은 유기식품
 - ② 한국과 상호 동등성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유기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유기가공식품(유기 농산물과 유기축산물은 해당되지 않음)

Q 3. 수입 유기식품 신고방법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한국「유기식품법」에 따라 인증 받은 유기식품
 - ⇒ 한국법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사본과 인증기관이 발행한 거래 인증서(원본)
- ② 한국과 상호 동등성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유기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유기가공식품(유기 농산물과 유기축산물은 해당되지 않음)
 - ⇒ 해당국가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사본과 수입증명서(NAQS Import Certificate)(원본)
- 신고는 해당 유기식품의 통관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착항지 도착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4. 수입 유기식품의 표시방법은?

- 유기식품법 제18조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의무 표시 대상은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전화번호', '포장작업장 주소', '인증번호', '인증기관명' 및 '생산지'입니다.
 - 인증사업자 성명 또는 업체명 : 인증서 기재된 명칭대로 표시하되, 단체 인증 제품에 개별 생산자명을 표시하는 경우는 단체명 뒤에 괄호로 표시
 - 전화번호 : 소비자 상담 가능한 판매워 전화번호
 - 포장작업장 주소 : 포장 작업장 주소를 번지까지 표시
 - **인증번호 및 인증기관명**: 해당 사업자 인증서 기재된 인증번호 및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명 표시(인증기관명은 약칭 표시가능)
- 생산지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
- ※ 위 내용은 각 개별 법령「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또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글표시사항과 함께 표시 가능

Q 5. 수입 유기식품 신고수리 절차는?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5.00	식품 등 시험 · 검사기관(식품등의 수입 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접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검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결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현지 확인 (담당자)
	1
	검체채취 (담당자)
	↓
	검사신청서 처리 및 검정지시서 결재 (검사기관장)
	↓
	분석검사 (검사기관)
	→ → (71 (1717)
신고확인증 발급 ←──	결재 (검사기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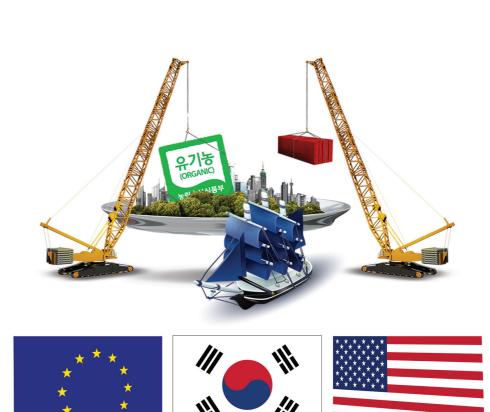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수입 유기식품 신고 건에 대해 인증 및 표시기준의 적합여부를 검사하고, 적합시에는 '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 **인증기준 적합성** : 인증서와 거래인증서 또는 수입증명서를 확인하여 인증 받은 제품인지 확인
- 표시기준 적합성 : 유기식품법에 따른 표시사항의 적정성 확인
- ※ 의무표시사항: 인증번호, 인증기관명, 업체명, 포장작업장 주소, 전화번호, 생산지 등

Q 6. 외국인증(JAS 등)을 받은 유기식품도 수입·판매 가능한가요?

- 2014년 1월 1일부터 유기식품인증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국내법에 따라 인증 받지 않은 식품은 유기식품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국가간 상호 동등성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유기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식품은 국내에서 유기식품으로 수입·판매가 가능합니다.



IV. 동등성 인정



동등성 인정



Q 1.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 제도는 어떤 제도인지요?

- 상호 동등성 인정이란,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기식품 인증제도가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의 원칙과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인증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검증되면, 양국의 정부가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상대국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이 자국과 동등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즉,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 상대국에서 생산된 유기가공식품은 자국의 인증을 받은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추가 인증 절차 없이 유기가공식품으로 표시·수입이 가능합니다.
- 동등성 인정 협정이 체결되면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동등성 인정 국가명, 인정범위, 유효기간, 제한조건 등을 게시하게 됩니다.

Q 2. 동등성 인정받은 국가의 현황은 어디에서 확인 가능한가요?

● 국가현황 등 동등성 인정 협정과 관련된 자료는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www.enviagro.go.kr)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Q 3. 한국과 미국·EU이 체결한 상호 동등성 인정의 의미는?

• 한국 또는 미국·EU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인증 받은 유기가공식품은 동등성 인정 협정의 조건에 부합되면, 상대국에서 '유기(Organic)'등으로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한국에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미국에서 「국가유기프로그램(NOP)」, EU: (EC) No 834/2007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으로 부터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은 상대국 규정에 따른 인증을 추가적으로 받지 않고'유기 (Organic)' 등으로 표시하여 수출(판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항생제(테트라사이클린, 스트렙토마이신)를 사용한 사과, 배를 원료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EU와는 항생제 사용 등 수입 제한조건 없음, 미국 협정내용과 다른 항목)

Q 4. 한·미간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협정의 범위는?

● 한·미 양국의 규정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으로 인증을 받은 식품으로 유기원료가 95% 이상 함유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가공식품의 범위는 한국 식품공전의 정의*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 ☆ 가공식품 정의(식품공전 1.2.29): "가공식품"이라 함은 식품원료(농·임·축·수산물 등)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 시키거나 이와 같이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 또는 이 혼합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포장한 식품을 말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임·축·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 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등의 처리과정 중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 또한, 지역범위는 한국과 미국에서 최종 제조된 식품에 한정되지만, 제3국에서 생산된 원료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인정 범위는 농산물 또는 축산물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유기가공식품으로 수산물을 원료로 한 유기가공식품은 동등성 인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5. 동등성 인정 협정에 따라 한국 인증제품을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구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나요?

- 한국 내에서 최종 가공된 유기가공식품에 한정됩니다.
- 항생제를 사용한 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유기가공식품은 미국 시장에서 유기로 표시될 수 없습니다.
- 미국으로 수출된 제품에 대한 농약, GMO 등 금지물질의 잔류 검사와 후속 조치사항은 미국 의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Q 6. 동등성 인정 협정에 따라 미국 인증제품이 한국에 수입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구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나요?

- 미국 내에서 최종 가공된 유기가공식품에 한정됩니다.
- 항생제(테트라시클린, 스트렙토마이신)를 사용한 사과·배를 원료로 사용한 유기가공식품은 한국으로 수입될 수 없습니다.
- 한국으로 수입된 제품에 대한 농약, GMO 등 금지물질의 잔류 검사 및 후속 조치사항은 한국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Q 7. 동등성 인정 협정에 따라 인증품을 수출하는 경우 상대 국가의 유기농 인증로고를 사용할 수 있나요?

- 동등성 인정 협정에 따라 수출하는 자국의 인증로고 또는 상대국의 인증로고를 선택하여 사용하거나, 양국 로고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상대국에 수출한 인증품의 유기표시 방법은 수입국의 유기표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Q 8. GMO와 관련하여 동등성 인정 제품에 어떤규정이 적용되나요?

- 양국 모두 현행 인증기준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제조 및 취급 과정에서 GMO의 사용은 금지됩니다.
- GMO의 잔류검사 및 검출 시의 후속조치는 수입국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 한국의 경우: 통관 및 유통과정에서 인증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실시하는 잔류검사에서 GMO가 검출된 제품은 유기표시를 삭제하도록 명하고, 유기표시가 없는 식품은 일반 식품으로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GMO 표시기준을 적용 받습니다.

9.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이 동등성 인정 협정의 내용을 위반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 지나요?

 감독기관(NAQS, NOP)이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중대한 위반사항을 확인하게 되면 위반사실을 상대국 감독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인증품 또는 인증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10. 동등성 인정 협정이 안된 이집트에서 생산된 미국 유기가공식품(USDA) 인증 제품 수입시 유기로고 사용가능여부와 USDA 인증로고 사용조건은?

● 이집트에서 수입된 USDA 인증제품은 우리나라에서 유기가공식품으로 유통·판매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된 유기가공식품 제품에 한정하여 USDA 로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11. 미국에서 수입된 유기가공식품의 잔류농약 기준의 적용 방법은?

- 한-미 동등성 인정 협정을 통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유기가공식품은 잔류농약 검사 및 검출 시의 후속조치는 우리나라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한국과 미국 모두 유기식품 생산시 유기 합성농약의 사용을 금지하며 사후관리 조사 과정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경우 인증기관이 원인조사를 실시하여 인증사업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 인증취소 또는 해당 제품의 인증표시 삭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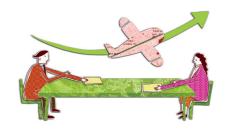
Q 12. 동등성 협정을 통해서 수입되는 유기가공식품의 구비서류는?

• 상대국의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사본과 NAQS 수입증명서 입니다. 한국에서의 별도의 추가 인증절차 없이 '유기'표시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Q 13. EU인증을 받은 칠레산 와인(Organic 표기)이 동등성 인정 대상에 포함 되는지요?

● EU인증을 받았더라도 EU에서 생산되지 않은 칠레산 와인은 동등성 인정 대상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즉, 동등성 협정국이 아닌 제3국에서 생산된 유기가공식품은 인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Q 14. 향신료의 원산지가 인도, 인도네시아이며, 가공은 이탈리아 에서 생산하여 수입코자 하는데 동등성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 제3국에서 조달하여 생산된 유기가공식품 일지라도 최종 생산국이 유기 동등성 협정을 체결한 EU 국가 이므로 동등성 협정을 통해 수입이 가능합니다.
- Q 15. EU의 유기가공식품을 동등성 인정으로 수입할 때 제3국 (미국 USDA)의 로고가 함께 있는데 EU로고와 같이 사용해도 되는지요?
 - EU에서 최종 가공되어 동등성인정으로 수입되는 제품이므로 USDA 로고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Q 16. 동등성 협정 국가의 유기가공식품이면서 우리나라 인증 기관의 인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동등성 협약으로 수입할 경우 우리나라 인증번호는 지워야 하는지요?
 - 동등성 협정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입국의 인증기관명과 인증번호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인증기관 명칭과 인증번호는 표시되어도 무방합니다.

- Q 17. EU에서 가공된 유기농 차(Tea) → 중국에서 소분·포장 → EU로 반입된 제품을 동등성 인정으로 수입이 가능한지요?
 - EU에서 최종 제조·가공된 후 제3국에서 소분·포장 등 추가 작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등성 인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Q 18.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 제3국을 경유하여 제3국에서 수입되는 경우(추가적인 가공·소분 포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에 동등성 인정이 되는지요?
 - 유기가공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과 협정이 체결된 미국과 EU 모두 제3국 경유는 인정되지 않기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Q 19.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국과 국내의 허용물질이 일부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수입이 가능한지요?

 동등성 인정 기술검증 과정에서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상대국의 허용물질을 포함한 인증 기준을 상호검증하였으므로 협정 체결국의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은 수입 가능합니다.



붙임 1

●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 지정현황 ('16.03.15. 기준)

9 11 1 1 0 1 1 2		20 12 1020	—,
지정 번호	기 관 명	기 관 명	전화번호
1	㈜한국농식품인증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각리 1길 7 (오창벤쳐프라자 303호)	043-212-0934
2	(유)돌나라유기인증코리아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북원로 3051 (장양리 192-3)	033-732-4234
9	글로벌유농인 영농조합법인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 중앙대로 136길 30 (동호동)	053-326-9895
13	오씨케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 중앙로 26 (서초동, 래미안 서초유니빌 521)	02-522-4351
24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록 120 (화양동, 건국대학교)	02-450-4500
40	한국친환경유기인증센터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175 (산본동, 에스에이타워 303호)	031-429-9814
47	㈜네오친환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6번길	031-205-0199
50	건국에코써트인증원㈜	충청북도 충주시 충원대로 268 (단월동,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	1599-6259
56	㈜녹색친환경인증센터	경상남도 밀양시 중아로 26-3	055-356-6279
60	우리농인증원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창대학로 72 (거창전문대학교)	055-941-0828
68	ACO(Australian Certified Organic)	18 Eton St Nundah Queensland 4012 Australia	+61 7 3350 5706
69	BCS(BCS Oko-Garantie GmbH)	Marientorgraben 3-5 90402 Nurnberg, Germany	(본사) 49 911 42439-0 (한국) 041-562-6265
71	㈜비씨에스코리아	충남 천안시 월봉11길 20 (쌍용동, 안곡빌딩 403호)	041-562-6265
75	(사)제주농림수산식품인증센터	제주특별자치시도 제주시 남광로 187(일도이동, 대유상가) B 132	064-752-6050
78	(재)하동녹차연구소	경남 하동군 화개면 섬진강대로 3748-14	055-880-2888
87	㈜에코리더스인증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40 (도곡동, 양재SK허브프리모 B101호)	02-393-3922
92	ECOCERT SA	BP47 F-32600 L'Isle Jourdain France	(본사)33-5-62-07-34-24 (한국지사)1599-6259
93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전남 나주시 동수농공단지길 30-5 (동수동, 전라남도생물산업진흥재단식품산업연구센터)	061-339-1211
94	Control Union Certifications	Meeuwenlaan 4-6, 8011 BZ, P.O.Box 161, 8000 AD Zwolle, the Netherlands	(본사)31-38-4260100 (한국)02-2281-9200

※ 국내·외 유기식품에 대한 인증 가능 기관 목록

붙임 2

●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의 기준 (제18조제3항 관련)

1. 제한적 유기표시의 일반원칙

- 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포함되는 원재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
 - 2) 법 제25조에 따라 동등성 인정을 받은 유기가공식품
- 나.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를 할 수 있는 제품인 경우에도 다음 1) 또는 2)에 해당되는 사항을 표시 또는 광고해서는 아니 된다.
 - 1) 해당 제품에 별표 5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표시
 - 2) 유기라는 용어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

2.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표시기준

- 가. 70퍼센트 이상 유기농축산물인 제품
 - 1)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원재료(정제수와 염화나트륨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70퍼센트 이상이 유기농축산물이어야 한다.
 - 2) 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다.
 - 3) 표시장소는 주 표시면을 제외한 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다.
 - 4)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 나. 특정 원재료로 유기농축산물을 사용한 제품
 - 1) 특정 원재료로 유기농축산물만을 사용한 제품이어야 한다.
 - 2) 해당 원재료명의 일부로 "유기"라는 용어를 표시할 수 있다.
 - 3) 표시장소는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만 표시할 수 있다.
 - 4)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제한적 유기표시 사업자의 준수사항

제한적 유기표시를 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식품, 비식용가공품)에 사용된 유기농축산물의 원료 또는 재료의 함량 등 표시와 관련된 자료를 사업장 내에 비치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3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인증신청서(제조·가공 또는 취급자용)

※ 디쪼이 자서비	· 건궁신성시(세소 : std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가강 또는 취급사용) 페기프로해(C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0	(앞쪽) 일(국외심사에 소요되는 체류 난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신청단위 []개인,[] 법인, [] 단체	-					
	성명(단체명)	취급자 수						
신청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인증구분 제조· <u>가공자</u> : [] 유기가공·	식품, [] 비식용유기가공품	-					
	취급자: [] <u>저장자</u> , []	<u> </u>	다, [] 판매자					
	신청구분 [] 최초 인증 신청,	[] 갱신 신청, [] 유:	효기간 연장 신청					
신청내용	사업장 소재지							
	신청면적(m²)							
	신청품목		,					
림축산식품	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 보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 한다) 제10조, 제16조, 제41조제1항에	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물품질관리원 기관의 장							
철부 2, 성로 3.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품 제조·가공 및 규칙 별표 4의 경영 관련 자료 1부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1부 제조·가공,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 수 료 규칙 제71조 및 별표 19에 따른 수수료					
	동	의 서						
O -4 /1								
1. <u>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등)</u> 의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인증유효기간 동안 수집 · 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등)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인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친환경농업 육성·관리·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붙임 4

◎ 기준적합성 확인으로 사용 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 유형 (제4조제1항 관련)

구분	식품유형
те	버터
	반경성치즈
	전지분유
	탈지분유
	혼합분유
	농축유청
	유청분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유청단백분말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유당
(식약처고시 제2013-206호)	유단백가수분해물가공식품
	건조저장육류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기준규격외 축산물(유단백분말)
	코코아가공품류
	초콜릿류
	잼
	마멀레이드
	기타 잼류
	백설탕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갈색설탕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	액상포도당
(식약처고시 제2013-204호)	분말·결정포도당
	덱스트린
	당시럽류
	프락토올리고당
	이소말토올리고당
	말토올리고당
	콩기름(대두유)

28

(서명 또는 인)

구분	식품유형
	옥수수기름(옥배유)
	채종유(유채유 또는 카놀라유)
	해바라기유
	올리브유
	팜유류
	야자유
	혼합식용유
	쇼트닝
	기타 식용유지
	다류
	커피(볶은커피)
	과·채주스
	두유액
	분말두유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발효식초
	카레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	향신료가공품
(식약처고시 제2013-204호)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전분
	기타전분
	과·채가공품류
	벌꿀
	밀가루
	영양강화밀가루
	기타 밀가루
	건조효모
	건조효모제품
	효모추출물제품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기타가공품(당밀, 맥아추출액)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감마리놀렌산함유유지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식약처고시 제2013-207호)	대두레시틴
(ココペーペーペーペーン)	

붙임 5

● 유기가공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로 사용이 가능한 물질

PJ = 1 /= 1 \		국제 분류	국제 식품첨가물로 사용 시 부류		가공보조제로 사용 시	
명칭 (한)	명칭 (영)	분류 번호 (INS)	허용 여부	허용범위	허용 여부	허용범위
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		×		0	식품 표면의 세척·소독제
구아검	Guar gum	412	0	제한 없음	×	
구연산	Citric acid	330	0	제한 없음	0	제한 없음
구연산삼 나트륨	Trisodium citrate	331 (iii)	0	소시지, 난백의 저온살균, 유제품, 과립음료	×	
구연산칼륨	Potassium citrate	332	0	제한 없음	×	
구연산칼슘	Calcium citrate	333	0	제한 없음	×	
규조토	Diatomaceous earth		×		0	여과보조제
글리세린	Glycerin	422	0	제한 없음 (가수분해로 얻어진 식물 유래의 글리세린 만 사용 할 수 있음)	×	
퀼라야추출물	Quillaia Extract	999	×		0	설탕 가공
레시틴	Lecithin	322	0	제한 없음 (다만, 표백제 및 유기 용매를 사용하지 않고 얻은 레시틴만 사용할 수 있음)	×	
로커스트콩검	Locust bean gum	410	0	식물성제품, 유제품, 육제품	×	
무수아황산	Sulfur dioxide	220	0	과일주	×	
밀납	Beeswax	901	×		0	이형제
백도토	Kaolin	559	×		0	청징(clarification) 또는 여과보조제
벤토나이트	Bentonite	558	×		0	청징(clarification) 또는 여과보조제

		굽젤		식품첨가물로 사용 시	가	공보조제로 사용 시
명칭 (한)	명칭 (영)	국제 분류 번호 (INS)	허용 여부	허용범위	허용 여부	허용범위
비타민 C	Vitamin C	300	0	제한 없음	×	
DL-사과산	DL-Malic acid	296	0	제한 없음	×	
산소	Oxygen	948	0	제한 없음	0	제한 없음
산탄검	Xanthan gum	415	0	지방제품, 과일 및 채소제품, 케이크, 과자, 샐러드류	×	
수산화나트륨	Sodium hydroxide	524	0	곡류제품	0	설탕 가공 중의 산도 조절제, 유지 가공
수산화칼륨	Potassium hydroxide	525	×		0	설탕 및 분리대두 단백 가공 중의 산도 조절제
수산화칼슘	Calcium hydroxide	526	0	토르티야	×	산도 조절제
아라비아검	Arabic gum	414	0	식물성 제품, 유제품, 지방제품	×	
알긴산	Alginic acid	400	0	제한 없음	×	
알긴산나트륨	Sodium alginate	401	0	제한 없음	0	
알긴산칼륨	Potassium alginate	402	0	제한 없음	×	
염화마그네슘	Magnesium chloride	511	0	두류제품	0	응고제
염화칼륨	Potassium chloride	508	0	과일 및 채소제품, 비유화소스류, 겨자제품	0	
염화칼슘	Calcium chloride	509	0	과일 및 채소제품, 두류제품, 지방제품, 유제품, 육제품	0	응고제
오존수	Ozone water		×		0	식품 표면의 세척·소독제
이산화규소	Silicon dioxide	551	0	허브, 향신료, 양념류 및 조미료		겔 또는 콜로이드 용액제
이산화염소(수)	Chlorine dioxide	926	×			식품 표면의 세척·소독제

	명칭 (영)	국제 부류		식품첨가물로 사용 시	가·	공보조제로 사용 시
명칭 (한)		분류 번호 (INS)	허용 여부	허용범위	허용 여부	허용범위
차아염소산수	Hypochlorous Acid Water		×		0	식품 표면의 세척·소독제
이산화탄소	Carbon dioxide	290	0	제한 없음	0	제한 없음
인산나트륨	Sodium phosphate (Mono-,Di-,Tribasic)	339 (i)(ii)(iii)	0	가공치즈	×	
젖산	Lactic acid	270	0	발효채소제품, 유제품, 식용케이싱	0	유제품의 응고제 및 치즈 가공 중 염수의 산도 조절제
젖산칼슘	Calcium Lactate	327	0	과립음료	×	
제일인산칼슘	Calcium phosphate, monobasic	341 (i)	0	밀가루	×	
제이인산칼륨	Potassium Phosphate, Dibasic	340 (ii)	0	커피화이트너	×	
조제해수염화 마그네슘	Crude Magnessium Chloride (Sea Water)		0	두류제품	0	응고제
젤라틴	Gelatin		×		0	포도주, 과일 및 채소 가공
젤란검	Gellan Gum	418	0	과립음료	×	
L-주석산	L-Tartaric acid	334	0	포도주	0	포도주 가공
L-주석산 나트륨	Disodium L-tartrate	335	0	케이크, 과자	0	제한 없음
L-주석산 수소칼륨	Potassium L-bitartrate	336	0	곡물제품, 케이크, 과자	0	제한 없음
주정 (발효주정)	Ethanol (fermented)		×		0	제한 없음
질소	Nitrogen	941	0	제한 없음	0	제한 없음
카나우바왁스	Carnauba wax	903	×		0	이형제
카라기난	Carrageenan	407	0	식물성제품, 유제품	×	
카라야검	Karaya gum	416	0	제한 없음	×	

		굽젤		식품첨가물로 사용 시	가	공보조제로 사용 시
명칭 (한)	명칭 (영)	분류 번호 (INS)	허용 여부	허용범위	허용 여부	허용범위
카제인	Casein		×		0	포도주 가공
탄닌산	Tannic acid	181	×		0	여과보조제
탄산나트륨	Sodium carbonate	500 (i)	0	케이크, 과자	0	설탕 가공 및 유제품의 중화제
탄산수소나트륨	Sodium bicarbonate	500 (ii)	0	케이크, 과자, 액상 차류	×	
세스퀴탄산 나트륨	Sodium sesquicarbonate	500 (iii)	0	케이크, 과자	×	
탄산마그네슘	Magnesium carbonate	504 (i)	0	제한 없음	×	
탄산암모늄	Ammonium carbonate	503 (i)	0	곡류제품, 케이크, 과자	×	
탄산수소암모늄	Ammonium bicarbonate	503 (ii)	0	곡류제품, 케이크, 과자	×	
탄산칼륨	Potassium carbonate	501 (i)	0	곡류제품, 케이크, 과자	0	포도 건조
탄산칼슘	Calcium carbonate	170 (i)	0	식물성제품, 유제품 (탄산칼슘을 착색료로는 사용하지 말 것)	0	제한 없음
d-토코페롤 (혼합형)	d-Tocopherol concentrate, mixed	306	0	유지류(d-토코페롤은 산화 방지제로만 사용할 것)	×	
트라가칸스검	Tragacanth gum	413	0	제한 없음	×	
퍼라이트	Perlite		×		0	여과보조제
펙틴	Pectin	440	0	식물성제품, 유제품	×	
활성탄	Activated carbon		×		0	여과보조제
황산	Sulfuric acid	513	×		0	설탕 가공 중의 산도 조절제
황산칼슘	Calcium sulphate	516	0	케이크, 과자, 두류제품, 효모제품	0	응고제

	명칭 (영)	국제 부르	식품첨가물로 사용 시		가공보조제로 사용 시	
명칭 (한)		분류 번호 (INS)	허용 여부	허용범위	허용 여부	허용범위
천연착향료	Natural flavoring substances and preparations		0	제한 없음 (다만,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하여 고시한 천연 착향료로서 물, 발효주정, 이산화탄소 및 물리적 방법으로 추출한 천연 착향료만 사용할 수 있다)	×	
미생물 및 효소제제	Preparations of Microorganisms and Enzymes		0	제한 없음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 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하여 고시한 미생물 및 효소제제만 사용할 수 있다)	0	제한 없음(「식품위생 법」 제7조제1항에 따 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하 여 고시한 미생물 및 효소제제만 사용할 수 있다)
영양강화제 및 강화제	Fortifying nutrients		0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 이 의무화된 제품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하여 고시한 영양강화제 및 강화제만 사용할 수 있다)	×	

<u>35</u>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한국농식품인증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각리 1길 7 (오창벤쳐프라자 303호)	043-212-0934
(유)돌나라유기인증코리아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북원로 3051 (장양리 192-3)	033-732-4234
글로벌유농인 영농조합법인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 중앙대로 136길 30 (동호동)	053-326-9895
오씨케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 중앙로 26 (서초동, 래미안 서초유니빌 521)	02-522-4351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록 120 (화양동, 건국대학교)	02-450-4500
한국친환경유기인증센터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175 (산본동, 에스에이타워 303호)	031-429-9814
㈜네오친환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6번길	031-205-0199
건국에코써트인증원㈜	충청북도 충주시 충원대로 268 (단월동,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	1599-6259
㈜녹색친환경인증센터	경상남도 밀양시 중아로 26-3	055-356-6279
우리농인증원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창대학로 72 (거창전문대학교)	055-941-0828
ACO(Australian Certified Organic)	18 Eton St Nundah Queensland 4012 Australia	+61 7 3350 5706
BCS(BCS Oko-Garantie GmbH)	Marientorgraben 3-5 90402 Nurnberg, Germany	(본사)49 911 42439-0 (한국)041-562-6265
㈜비씨에스코리아	충남 천안시 월봉11길 20 (쌍용동, 안곡빌딩 403호)	041-562-6265
(사)제주농림수산식품인증센터	제주특별자치시도 제주시 남광로 187 (일도이동, 대유상가) B 132	064-752-6050
(재)하동녹차연구소	경남 하동군 화개면 섬진강대로 3748-14	055-880-2888
㈜에코리더스인증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40 (도곡동, 양재SK허브프리모 B101호)	02-393-3922
ECOCERT SA	BP47 F-32600 L'Isle Jourdain France	(본사)33-5-62-07-34-24 (한국지사)1599-6259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전남 나주시 동수농공단지길 30-5 (동수동, 전라남도생물산업진흥재단식품산업연구센터)	061-339-1211
Control Union Certifications	Meeuwenlaan 4-6, 8011 BZ, P.O.Box 161, 8000 AD Zwolle, the Netherlands	(본사)31-38-4260100 (한국)02-2281-9200